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845

발의연월일: 2020. 12. 22.

발 의 자:전용기・이상헌・임오경

김홍걸 · 양향자 · 박영순

윤재갑・최혜영・박 정

임호선 · 장경태 · 김종민

한준호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의 3차 재확산으로 인하여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들이 받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임. 집합금지 및 집합 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영업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에 서 인건비나 재료비, 전기요금 등은 줄일 수 있더라도 임대료는 고정적 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으로 가장 큰 부담 요인이 되고 있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코로나-19 등 제1급감염병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지만 감액 청구의 구체적기준이 없고 임대인이 감액 요구를 수용할 의무도 없기에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존재함.

한편, 지난 11월 소상공인연합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바라는 임대료 대책에 대해 '정부의 임대료 직접 지원'이라고 답한 비율 이 48.1%로 가장 높았던 바 소상공인에 대한 상가임대료 직접 지원이 가장 절실한 상황임.

이에 타인이 소유하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영업하는 소상공인이 감염병 유행으로 인하여 전년 동기대비 매출액이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경우 한시적으로 그 소상공인에게 상가건물 임대료의 일부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상가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4(소상공인에 대한 상가임대료의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타인이 소유하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영업하는 소상공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하여 전년 동기대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상공인에게 그 상가건물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간 효력을 가진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2조의4(소상공인에 대한 상가
	임대료의 지원) ① 중소벤처기
	업부장관은 타인이 소유하는 상
	가건물을 임차하여 영업하는 소
	<u> 상공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u>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하여 전
	년 동기대비 매출액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감
	소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상공인에게 그
	<u>상가건물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u>
	<u>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 절
	차 및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